

2000년대

복지농어촌건설의 초석을 마련한다.

1.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을 착실히 실천한다.

■ 1990년도에 專業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농지구입 자금 2천 200억원을 지원하고, / 농어민 후계자 2천 명을 선발, 내실 있게 육성 지원한다./ 영세 농가에게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, 공업화와 정주 생활권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.

■ 공개념에 입각한 농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, △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, 부채지주 보유 농지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등 경지 유전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천한다.△농지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등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시행하여 임차농을 보호한다.△농촌주택·농업용시설 등은 신고로 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, 인삼·약초 등 다년생 작물의 재배를 자유화하는 등 농민의 편의와 소득 향상을 위해 농지보전 이용제도를 개선한다.

■ 밭 용수를 개발하며, 90년도에 경지정리 면적을 57만 8천 정보로 확대한다. / 90년도에 농기계 부품 비축 지원금을 250억원으로 확대한다. / 남해화학 비료공장의 외국인 지분(25%)을 농협이 인수하도록 추진한다.

■ 농진청 산하에 유전공학 센터를 설치,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발하며 / 인공위성 해양 원격탐사 방법을 활용, 어황 정보를 조기에 전파한다.

■ 군 단위 1일 통근권을 조성하여 농어촌을農과工이 병존하는 고소득 생활권으로 조성한다. 이를 위해 90년도에, 농어촌소득원 도로를 1,483km(1989 : 1,043km)로 연장하며 / 농어촌 가로등을 5만등으로

늘린다.

■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농림수산부 직제 개편, 연초 국회에서 관계 법령 입법, 농어촌공사 설립등을 추진한다.

2.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한다.

■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정부·학계·농민 대표(비제도권 단체 포함)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, 개방 품목 선정, 직간접 피해 조사, 대체작목 개발 등을 추진하며, / 93년까지 5,061억원을 지원, 1989~91 수입자유화에서 보완대책을 철저히 실천한다.

■ 사과·배·화훼 등 수출이 유망한 작목을 집중 개발하며, 수출시장 개척과 수집 자금 등을 지원한다.

■ 동식물 검역기능을 확충하며, 관세제도 개선 및 산업피해 구제제도 등을 활용, 일시 다량 수입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.

■ 농수산물 통상조직을課 단위에서局 단위로 보강, 우루과이 라운드, 쇠고기 협상, EC 통합 등에 적극 대응한다.

3. 농어촌 소득원을 확충하며

농축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킨다.

■ 농공지구를 250개소로 확대 지정하며, 임주 기업에 대해 시설·운영자금 등을 특별 지원한다. / 특산 단지의 제품 고급화와 시장 개척을 중점 지원하며, 현지 주민의 참여를 통한 농어촌 휴양지 개발체제를 확립한다.

■ 산림을 생산 및 환경임지와 산업임지로 재편하며 / 임업진흥지역 150만ha에 경제림을 조성, 목재 자급률을 51%(2030년)로 높인다. / 산림개발사업단을 조직, 산림사업을 전담토록 하며 / 수렵장 등 수의사업을 통해 산림조합의 자립기반을 조성한다. / 실수요자 매매증명제, 代執行制 등 산림방치·임야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. /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양주·중남미·소련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며, 특히 시베리아 산림(100만ha)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.

■ 수산업법을 개정, 면허기간이 만료된 마을 앞 개인 양식어장은 어촌계에 우선 면허하며 / 어민 대표가 중앙 및 지방 수산 조정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며 / 어업 피해보상을 허가·신고 어업으로 확대한다. / 인공 어초를 9천ha 설치하고, 인공 종묘 9천만尾를 방류하며 / 자원 상태에 알맞는 표준 船型을 설정한다. / 소련·중국 해역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산외교를 강화한다.

■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90년 5천6백억원, 92년 1조원으로 확대하며 / 생산·출하 약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하한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양념·채소류의 수급을 안정시킨다. / 소·돼지에 대해 안정기준 가격 제도를 도입하며 / 집유 일원화 및 검사 공영제도를 실시, 우유 수급을 안정시킨다. / 김치·고추장·민속주 등 자가 생산품의 상품화를 유도, 농어민과 농어민 단체의 가공산업 참여를 지원하며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지 가공공장 건설에 40억원을 전통식품 개발에 12억원을 지원한다.

4. 자금시대의 쌀 수급관리 체제로 전환한다.

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 위주로 생산 시책을 추진, 통일계 재배면적과 수매량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킨다. / 정부미를 저가(학교급식 50%, 가공용 90%)로 공급하며, 쌀을 원료로 한 가공품 및 주류의 개발을 지원한다.

■ 남북 경제교류에 대비하여 원활한 쌀 수급관리 체계를 갖춘다.

5. 농어촌 경제·사회의 안정기반을 구축한다.

■ 2ha 미만 농어가에 대해 600만원 한도내에서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를 감면해 줌으로써 「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한다.

■ 영농어·양축 자금을 경영비의 39%(1989:2조 3,400억원)에서 90년에는 50%(3조 1,700억원) 수준까지 확대 지원한다.

■ 농업계 고교 및 먼 지역 중학교에 다니는 1ha 미만 농어민 자녀에 대해 학자금(90년도에 모두 209억원)을 지원한다.

■ 지방자치제에 대비, 자율 농정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농수축협 등의 지역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선거를 4월말까지 완료, 자율적·민주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.

■ 지역 “농어촌발전심의회”를 통해 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·추진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지원한다.

